

한국폴리텍대학-국민연금공단, 손잡고 ‘퇴직자 재취업’ 본격 지원

- 양 기관 강점 결합해 실효성 높은 재취업 교육과정 하반기 운영 시작

한국폴리텍대학(이사장 이철수)과 국민연금공단(이사장 김성주)은 13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‘퇴직(예정)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’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강점인 ‘노후 준비 설계(국민연금공단)’와 ‘중장년 기술교육(한국폴리텍대학)’ 역량을 결합해, 실효성 있는 재취업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주요 협력 분야는 ▲재취업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 운영 ▲재취업 설명회 공동 개최 ▲임직원 대상 기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.

한국폴리텍대학은 앞서 공무원연금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운영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기술교육에서 평균 5.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유사 모델의 실효성을 이미 입증한 바 있다.

이번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약 역시 같은 방식으로, 올 하반기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.

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“이번 협력은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평생 기술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쥐여주는 것”이라며, “우리 대학이 축적해 온 기술교육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중장년이 당당하게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한편, 한국폴리텍대학은 만 40세 이상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‘중장년 특화과정’을 전국 40여 개 캠퍼스에서 운영 중이다. 이를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 숙련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며,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 자세한 교육 관련 내용은 공식 누리집(www.kopo.ac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붙임1. 행사 개요

2. 업무협약서

담당 부서	경영관리실 홍보부	책임자	부 장	최진경 (032-650-6740)
		담당자	대 리	김재민 (032-650-6742)
	직업교육국 학사운영부	책임자	부 장	오준석 (032-650-6663)
		담당자	교 수	신수림 (032-650-6676)



□ 개요

- (일시) 2026. 4. 13.(월) 14:00
- (장소) 국민연금공단 행복연금관 9층, 임원회의실 ※ 전주시 소재
- (협약주체) 한국폴리텍대학, 국민연금공단
- (참석자)
 - 한국폴리텍대학: 이철수 이사장, 직업교육국장 등
 - 국민연금공단: 김성주 이사장, 인사혁신실장 등
- (주요내용)
 -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퇴직(예정)자의 체계적인 은퇴 설계를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공동 개발·운영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기회를 제공

□ 세부일정

시간		주요내용	대상자	장소
14:00~14:25	25'	차담	- (공단) 이사장, 인사혁신실장, 인재개발부장 - (한국폴리텍대학) 이사장, 직업교육국장, 신기술교육원장	접견실
14:25~14:30	5'	개회	- (공단) 인재개발부장	임원회의실
14:30~14:40	10'	인사말씀	- (공단) 이사장 - (한국폴리텍대학) 이사장	
14:40~14:50	10'	업무협약	- (공단) 이사장 - (한국폴리텍대학) 이사장	
14:50~15:00	10'	기념 촬영	- (공단) 이사장, 인사혁신실장, 인재개발부장 - (한국폴리텍대학) 이사장, 직업교육국장, 신기술교육원장	

업 무 협 약 서

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과 국민연금공단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중장년 직업교육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,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을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대상 재취업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내용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.

1. 재취업 기술교육과정 개발 및 특화과정 공동운영
2. 재취업 설명회(상담) 공동운영
3. 공단 임직원 대상 기술체험 운영
4. 교육과정 모집·홍보에 관한 협력
5. 전문강사 인력풀의 상호 제공
6.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제3조(비밀유지)

1. 양 기관은 본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2. 제1항에 따른 양 기관의 비밀 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.

제4조(협약의 해석)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.

제5조(업무협약)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6조(협약기간 및 변경·해약)

1. 협약기간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,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2.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로 부터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기관별로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4월 13일



이사장 이 철 수



이사장 김 성 주